

예산총칙

제1조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375,997,817	430,751,000
일반회계	6,108,080,465	305,404,000
특별회계	2,267,917,352	125,347,000
공기업특별회계	615,084,924	42,712,000
수도사업특별회계	280,032,252	28,003,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2,932,779	11,646,0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02,119,893	3,063,000
기타특별회계	1,652,832,428	82,635,0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9,233,668	1,461,000
경륜사업특별회계	42,885,192	2,144,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63,736,982	23,186,000
교통사업특별회계	64,827,073	3,241,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2,442,599	3,622,000
공영터미널조성사업특별회계	1,145,440	57,0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767,371,872	38,368,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6,472,601	323,000
기반시설특별회계	1,528,705	76,000
유료도로특별회계	41,065,125	2,053,000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112,408,522	5,620,000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17,919,698	895,000
재정비축진특별회계	31,794,951	1,589,000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497,000천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416,365,000천원, 특별회계 142,000,000천원이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금회 추경이후에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포함)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